

식품등의 시험·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

※ 접수일자과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요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여권·외국인등록 번호)
	단체명·기관명 ※ 요청인이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작성합니다.	단체·기관 등록번호 ※ 요청인이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작성합니다.
	주소(사무소 소재지)	전화번호(팩스번호)
		전자우편 주소
	※ 요청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작성합니다.	
요청 내용	제품명	제조(수입)업소
	요청 항목	
	요청 사유	
결과 통보 방법	[] 열람·시청 [] 사본·출력물 [] 전자파일 [] 복제·인화물 [] 그 밖의 방법()	
수령 방법	[] 직접 방문 [] 우편 [] 팩스 [] 전자우편 [] 그 밖의 방법()	

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(관계행정기관의 장) 귀하

수수료	1.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·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: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. 제1호 외의 경우: 시험·분석 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금액
-----	---

접수증

접수번호	요청인 대표 성명	
접수자	직급	성명 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년 월 일

접수기관장

직인

※ 식품등의 시험·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뒤쪽)

[illegible]